

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 2003년 4월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을 인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대 직자로 정함. (안 제2조)
- 나.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1항)
- 다.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,000만원이상으로 정함. (안 제3조제2항)
- 라.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함.(안 제4조)

3. 검토의견

-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2. 12.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험가입을 위해 새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2조에서는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계약방법 및 보험 가입금액을 정하고 있으며,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- 동 조례제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되는 공무원은 시청 3명, 읍사무소 각 3명,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각2명 등 총 32명이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년 1,800천원 (50,000X36명)의 세출요인이 발생하게 됨.
- 동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되어 조례안 구성이나 조문내용 등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동 조례 제정으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보호장치를 확보하게 됨으로서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사고 예방효과는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

《印鑑證明法施行令》

제20조(보험·공제등에의 가입)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 <신설 2002. 12. 31>

시·군별 보험가입금액 및 입안 추진상황

(2003년 3. 27 현재)

시·군명	최저 보험가입금액			입안 완료여부		비 고
	5천만원	1억원	기 타	입안중	조례제정	
수 원 시		○		○		
성 남 시		○		○		
고 양 시		○		○		
부 천 시	○			○		
안 양 시		○		○		
안 산 시		○		○		
용 인 시						미 정
의정부시	○				○	
남양주시			3억원		○	
평택시	○			○		
광명시		○			○	
시흥시						미 정
군포시		○		○		
화성시	○			○		
파주시	○			○		
이천시			3,000만원		○	
구리시		○		○		
김포시		○		○		
포천시		○			○	
광주시		○			○	
안성시		○		○		
하남시			2억원		○	
의왕시			5억원		○	
양주시	○			○		
오산시		○		○		
여주군	○				○	
양평군			8,000만원	○		
동두천시		○		○		
과천시		○			○	
가평군		○		○		
연천군	○				○	